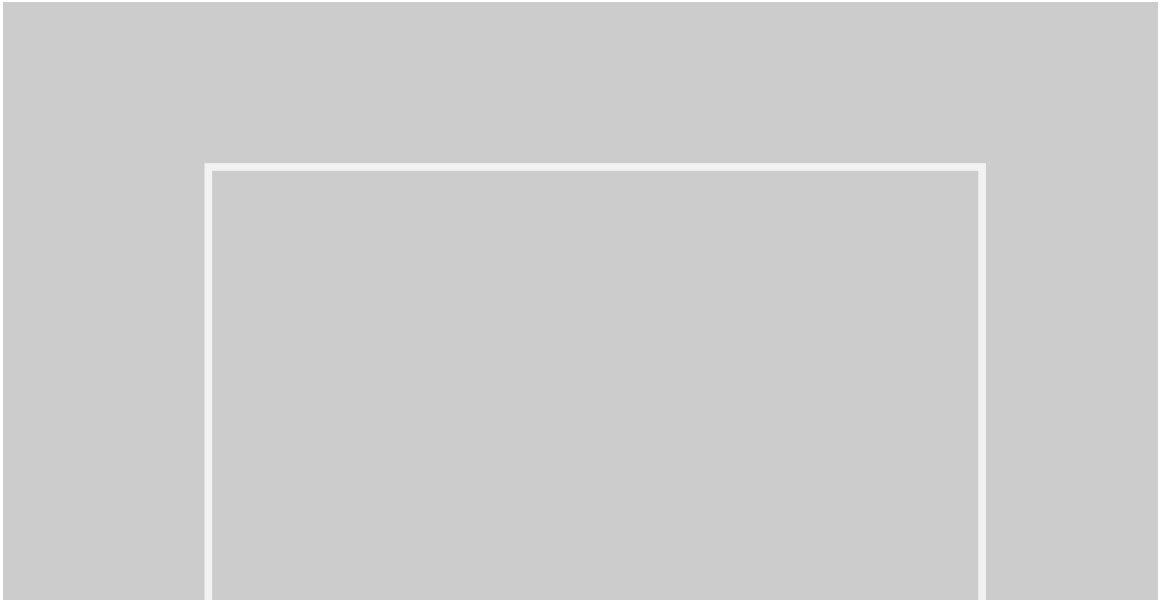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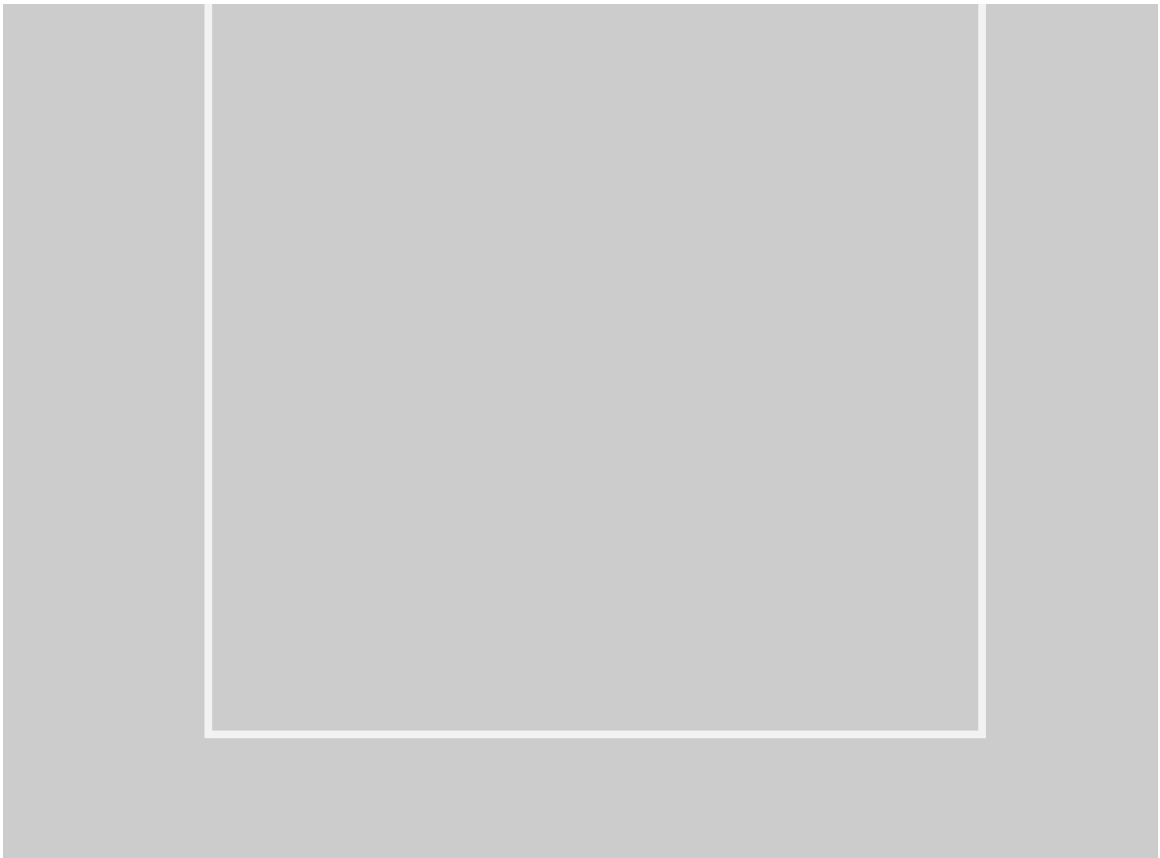
[2025년 ~ 2027년]

2025.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요 약



1 추진 배경

- ◇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 확대,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출현 등 어린이제품 환경변화를 고려
 - ☞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어린이제품안전법」 제5조에 따라, '16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변화하는 어린이제품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계획 수립·시행
 - * (1차) '16~'18년, (2차) '19~'21년, (3차) '22~'24년, **(4차) '25~'27년**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대상)
 - (사전안전관리)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KC마크 표기 後 시장 유통
 -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만건) : ('19) 4.8 → ('21) 8.2 → ('23) 10.1
 - (사후안전관리)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은 안전성조사 및 리콜, 불법제품 조사 및 벌칙 등을 통해 안전관리
 -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비율은 감소 추세(%) : ('19) 10.6 → ('21) 6.2 → ('23) 5.2
 - * 불법제품조사 위반비율은 60% 내외 수준(%) : ('19) 58.9 → ('21) 68.1 → ('23) 58.3
-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은 '19년~'21년 감소 하였으나, '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 * ('20) 28.4% → ('21) 19.3% → ('22) 21.5% → ('23) 21.9%
- 어린이제품 해외직구 금액은 최근 4년 연평균('20~'23년) 897억원(전체 해외직구 금액의 약 1.6%)로 '17~'19년 평균 606억원 대비 약 43% 증가
 - 어린이제품 유통규모는 연 19.3조원('20~'23년 추정)으로 연평균 5.3% 성장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에 새로운 위해 요인 증가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당면과제

-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가정에서 성인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제품**에서 많이 발생

* 어린이안전사고 : ('19) 2.5만건 → ('21)1.6만건 → ('23) 2.2만건

☞ 일반제품 및 가정에서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필요

- (해외직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 확산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 ('20) 787억원 → ('21)915억원 → ('22) 968억원 → ('23) 918억원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관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구축 필요

- (융복합·신기술)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으로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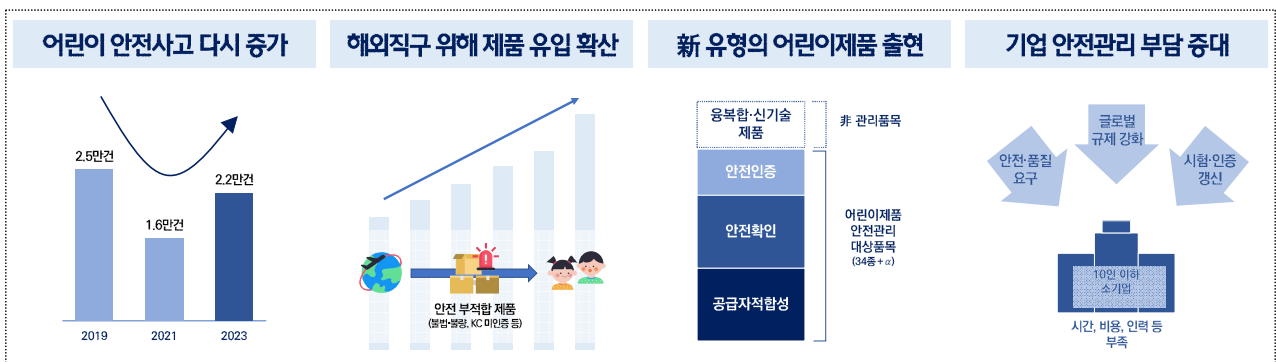
*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에 따라 모호한 안전관리 범위·기준 정비 필요

- (생태계)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및 개선을 요하는 인증제도 다수 존재

*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력·비용 등 부족

☞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안전인식 제고 필요



비전 · 목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 어린이제품 인증간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20% 이하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 연간 500건 이상
- 위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정비 (제·개정 10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친화기업 10개社 선정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4대 전략 · 9대 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5 주요 추진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현황 >

◇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가정에서 성인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제품에서 많이 발생

* 어린이안전사고 : ('19) 2.5만건 → ('21)1.6만건 → ('23) 2.2만건

1-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①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확대
 - 바닥재 등 안전사고 상위품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주의·경고 표시 신설
- ②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소비자·시험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사용연령제한 및 주의경고표시 등 공통안전기준 개정
 - * (예) 비타민 패치, 모기 물림 방지 팔찌 등

1-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 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제품 위해도에 따라 일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균형있게 조정*
 - * (수준조정 예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관리 필요 신종 어린이제품(예: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해 신규 품목으로 지정
- ②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 품목별·검사항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을 조정하고, 「부적합시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
- ③ 안전기준 개선을 통한 시험검사방법의 효율화·신속화
 - 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검사항목 중 안전과 관련이 낮은 항목은 완화·정비 추진
 - 어린이제품은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나, 기준이 상이한 일부 시험검사항목을 정비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현황 >

◇ (해외직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 확산*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24년), 조사대상 227개 제품 중 3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부적합률 14.1%, 유해물질 검출 등)

2-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조사 실사·공표
 - 국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위해제품 판매페이지 삭제 권고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근거 조항 마련
- ③ 위해제품 통관단계 차단
 - 위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 해당 제품 반입 금지 조치 요청

2-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 ①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및 조치 강화
 - 43개국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시 판매중지·불법조사 실시하고, 외국에서 수거된 제품에 관한 조치보고
- ②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확대·강화
 -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참여사를 확대(16개 → 20개)하고, 협의체 내 어린이제품 분과 신설 및 쇼핑몰 운영사 대상 제품안전관리 교육 확대
- ③ KC미인증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등 불법제품 안전관리 강화
 - 불법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확대로 구매대행 사업자 단속 및 국내 유통 차단, KC미인증 제품 등 불법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
- ④ 어린이제품 안전 정보(Open API) 제공·활용 활성화
 - Open API를 활용한 온라인쇼핑몰 위해제품 신속 차단, 소비자·기업의 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포럼 운영지원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황 >

◇ (융복합·신기술)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으로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

*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3-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 융복합 어린이제품(야외 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신기술 적용 어린이제품(자외선 이용 완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② 신규 위해요소에 대응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신규 위해요소에 대해 시험검사방법 및 주의경고표시를 개선하고,
인증받은 부품(내장된 부품, 교체형 부품)의 인증정보 표시방안 검토

3-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①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內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 안전
기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해외 안전기준의 제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 안전사고 이슈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업·소비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 수렴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현황 >

◇ (생태계)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및 개선을 요하는 인증제도 다수 존재

*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력·비용 등 부족

4-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① 제품 출시 前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선·보급

-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보급, 사용자 교육 실시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②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4개) 및 안전확인(16개)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25년~)

③ 어린이제품 우수기업 발굴

-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 연장, 시험검사비용 우선지원 등 우대사항을 통해 우수 어린이제품 기업 발굴·포상 및 제도 활성화 추진

4-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① 안전확인신고(5년)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안전법」 개정)

②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③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신속한 KC인증 면제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제확인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면제 평균처리기간 : 2일 → 1일)

④ 본품 이외 제품(편의제공 부분품)의 안전평가·인증 단계적 확대 추진

- 제품 케이스, 인쇄 띠지, 제품 보관 주머니 등 제품에 딸린 편의제공 부분품을 본품과 함께 인증이 진행되도록 업계에 홍보하여 단계적 유도

⑤ 시험검사기관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제고를 위해 시험·검사 일련의 절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시험검사방법의 일원화도 추진

4-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①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 제품 위험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별 안전체험관 활용도 제고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로드맵 수립하여 대국민 안전인식 확대

② 어린이제품의 개발·제조·유통 단계에 있는 관계자의 안전인식 제고

- 시험·검사 항목이 많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기준·인증 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제품안전 뉴스레터 발송) 추진

< [참고] 3차 계획 vs 4차 계획 비교 >

구분	제3차 기본계획('22-'24)	제4차 기본계획('25-'27)
비전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시장 퇴출로 안전사고 실질적 저감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조성
성과 지표	• (안전사고 감소) 18,494건 → 15,000건 • (온라인 혐의체) 15개사 → 40개사 • (기업지원) 90개 → 500개 • (안전교육) 7,000명 → 20,000명 • (안전기준) 유해물질 → 물리적 사고 저감 • (안전성 조사) 적발위주 → 법적 의무·처벌 강화	•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 20% 이하 • 해외직구 조사 : 500건/년 • 위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 : 제개정 10건 • 안전친화기업 선정 : 10개社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추진 전략 및 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① 사고 저감 중심 안전기준 강화 ② 안전 관리대상 확대 ③ 인증제품 유통 강화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2.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① 유통 관리체계 확립 ② 위해품목 집중 단속 ③ 유통 취약채널 관리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② 안전한 어린이제품 국내 유통환경 조성
	3.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② 기업 지원 확대 ③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4.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② 시험인증 역량 강화 ③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설립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5년 ~ 2027년]

20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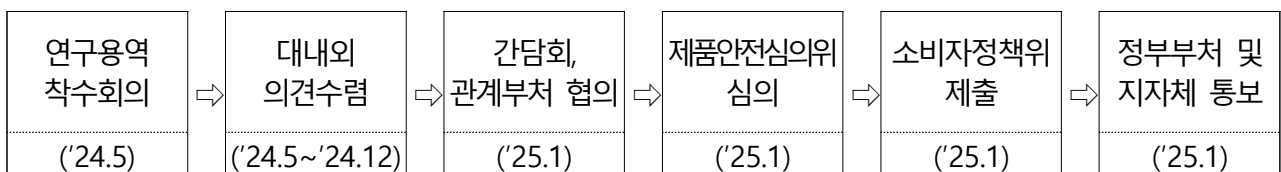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목 차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II.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2
III. 제3차 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11
IV. 평가 및 시사점	13
V. 비전 및 전략	14
VI. 추진과제	15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15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18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22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24
VII. 기대효과	28
[붙임1] 추진 일정	29
[붙임2] 소요 예산(안)	30
[붙임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품목	31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수립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 3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확보와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
- **(계획범위)**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표·기본방향, 사전·사후 안전관리, 기반조성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목표)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전 안전관리) 안전기준 연구·개발, 사고발생 예방·대책
 - (사후 안전관리) 안전성조사 기준·실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규제
 - (인프라) 어린이제품 안전 기반조성
- **(수립절차)** 어린이제품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 산업부(국표원) 관련부처·어린이제품 유관기관,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안전 상정



- **(의의·역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정책 비전·목표 설정 및 전략방향 제시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어린이제품 안전정책의 추진전략 및 이행과제를 수립·추진

II.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현황

□ 제도 개요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 중
 - *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타법 소관 품목 제외

□ 사전안전관리

- (안전인증) 제조·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後 KC 마크 표시(2년 마다 정기검사)
- (안전확인) 제조·수입자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後 KC 마크 표시(유효기간 5년)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수입자가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後 KC 마크 표시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

구분(품목 수)	대상품목	관리방법	위해도
안전인증(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제품검사 + 공장심사	높음 ↑ ↓ 낮음
안전확인(16개)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제품검사 (지정 시험·검사기관)	
공급자적합성확인 (14개+α)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등	제품검사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품수거 명령 등 행정처분
- (불법제품조사) KC미인증 어린이제품은 벌칙 또는 과태료 대상이며, 사실관계 확인 後 경찰 수사 의뢰 또는 과태료 처분
 - * 지자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판매중지 및 개선명령
- (통관검사) 조사 전문인력을 주요 세관에 파견하여 통관단계 수입 제품 중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

< [참고] 어린이제품 인증기관 지정 현황 >

□ 안전인증기관 (6개)

기관명	안전인증업무 범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KATRI 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FITI 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KOTITI 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시험기관 (8개)

기관명	안전확인 시험업무 범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보행기,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모차,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학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학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캐리어, 보행기, 유모차,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모차,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학용품, 유아용 침대,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KATRI 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보행기, 유모차,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유아용 침대,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의자, 학용품
FITI 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KOTITI 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유모차,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캐리어,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
한국에스지에스(주)	학용품, 완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학용품

2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현황

-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및 어린이제품 인증 대비 안전사고 비율은 '19년 ~ '21년 감소하였으나 '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현황('19 ~ '23)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A)	24,971	18,494	15,871	21,642	22,371
인증유지 건수* (B)	48,144	65,099	82,182	100,727	101,955
인증 건수 대비 안전사고 비율 (A/B, %)	51.9	28.4	19.3	21.5	21.9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인증유지 건수의 총합

< (참고) 어린이제품 인증 유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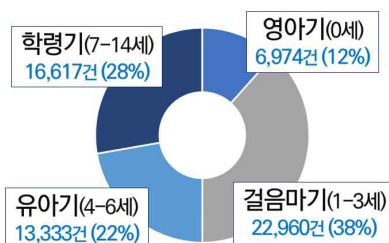
- 안전인증 2.7만건 / 안전확인 7.5만건 ('23년말)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은 최근 5년('19~'23) 연평균 20.6% 증가 추세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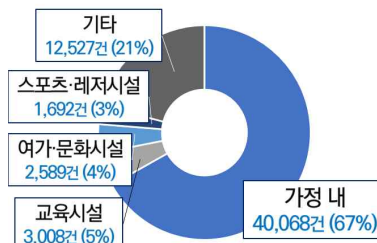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15,043	33,101	48,144	17,248	47,851	65,099	20,429	61,753	82,182	23,951	76,776	100,727	26,773	75,182	101,955

- (사고현황) 연령은 6세 이하(72%), 장소는 가정 내(67%)의 사고 비율이 높고, 사고유형은 미끄러짐·추락·부딪힘 등 물리적 사고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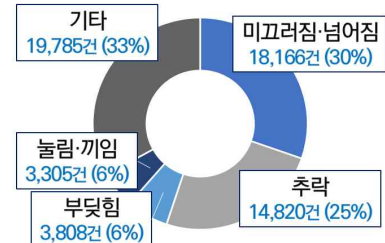
< 연령('21~'23) >



< 발생장소('21~'23) >



< 사고유형('21~'23) >



* 품목별 안전사고 현황('23년 기준) : 바닥재(10.8%) > 침실가구(10.4%) > 놀이터시설(7.5%) > 완구(5.5%) > 유아용 가구(4.7%) 등

□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수거 등의 명령·권고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감소 추세

- 시중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 조사(연 4회 및 수시조사) 실시 (어린이제품안전법 제6조)
-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제품 수거 등*의 명령·권고 및 개선조치권고 시행 (어린이제품안전법 제9조 및 제10조)

* 수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안전성 조사 현황 >

- 리콜 명령 비율 : 5.2% ('23년말)

* 리콜 명령 비율은 최근 5년('19~'23) 연평균 16.3% 감소 추세

(단위 : 건,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안전성조사(건)	2,668	2,742	3,014	2,450	2,337
리콜 명령(건)	282	213	186	129	122
리콜 권고(건)	9	5	1	-	-
개선조치 권고(건)		457	556	354	255
리콜명령 비율 (%)	10.6	7.8	6.2	5.3	5.2

□ (불법·불량제품 단속) KC미인증 또는 KC미표시 제품 등에 대한 조사 건수 대비 위반 비율(불법·불량제품)은 감소 추세

- 제품안전관리원은 신고된 제품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불법)·과태료 부과(불량) 등 조치
- 해당 제품 사업자 소재지의 지자체는 판매중지·개선·수거 등 조치

< 불법·불량제품 단속 현황 >

- 불법·불량제품 위반비율 : 58.3% ('23년말)

* 조사대상 제품 대비 위반제품 비율은 최근 5년('19~'23) 연평균 0.3%로 감소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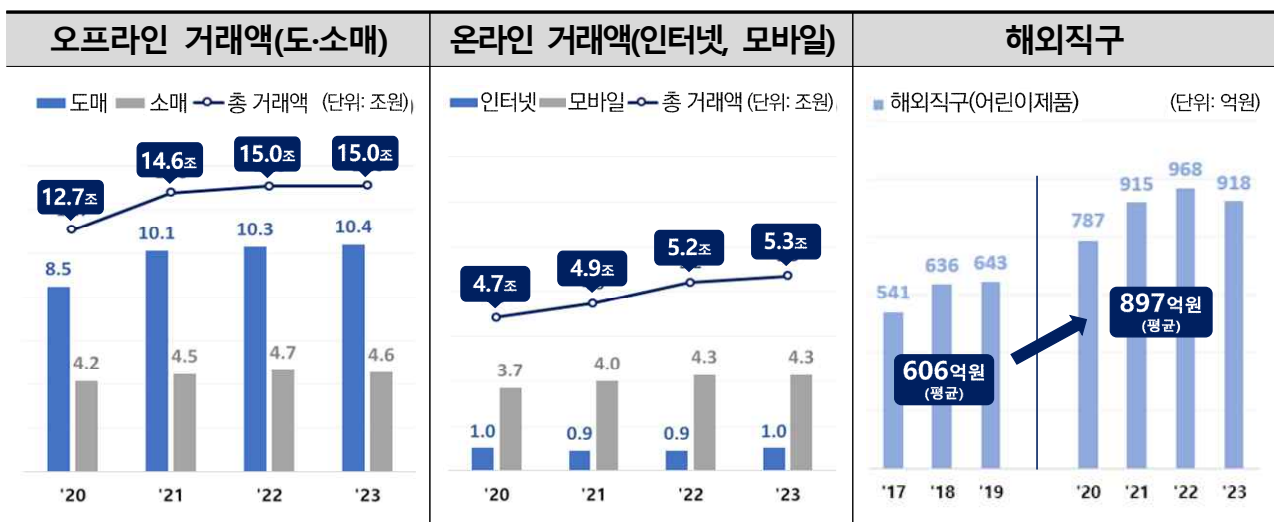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사 제품(건)	2,795	5,539	7,782	4,648	5,545
위반 제품(건)	1,646	3,935	5,302	2,876	3,235
조사대비 위반비율 (%)	58.9	71.0	68.1	61.9	58.3

3

어린이제품 유통(온라인 거래, 해외직구) 현황

- (유통) 유통 규모는 연간 19.3조원으로 연평균 5.3% 성장('20~'23년 추정)
- 도·소매 등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 규모는 전체의 약 74.1%(연평균 14.3조원),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거래는 전체의 25.9%(연평균 5.0조원)를 차지
 -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은 오프라인 시장(부적합률 2.2%)보다 온라인 시장(부적합률 18.6%)이 높은 편
- * (제품안전 모니터링 결과) 오프라인 29,424개 제품 중 1,075개 제품 부적합(3.6%), 온라인 42,744개 제품 중 11,759개 제품 부적합(27.5%)으로 적발 ('24년 기준)
-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 편의 강화, 해외 물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 등에 따라 해외직구 거래 증가
- 어린이제품 해외직구는 '20~'23년 연평균 897억원(전체 해외직구 금액의 약 1.7%) 규모로 '17~'19년 연평균 606억원 대비 약 48% 증가
 - 리콜 제품(안전기준 부적합 등) 중 일부(5%)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알리, 테무,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판매 중
- * 해외 리콜제품(11,216개) 중 570개 리콜 제품(5%)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1~'24.9)

< 어린이제품 유통규모 >



* 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24.3), 온라인쇼핑동향조사('24.8)

< [참고] 해외직구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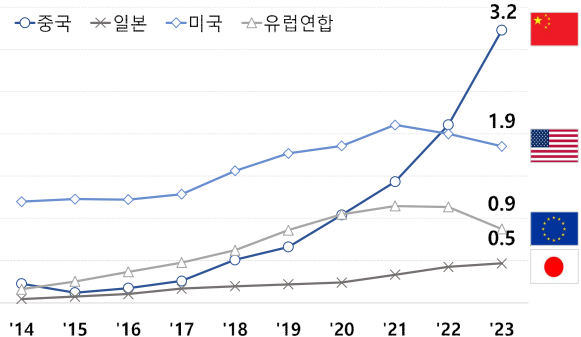
□ 해외 이커머스(아마존, 알리, 테무, 쉬인 등)는 초저가 정책을 내세우며 국내 소비자를 공략, 온라인쇼핑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거래액은 '14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로, '23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4% 증가(약 6.7조원)

* (품목별 비중) 의류 및 패션(41.0%) > 음식료품(23.1%) > 생활·자동차용품(7.6%) > 가전·전자통신기기(4.9%) > 화장품(4.3%) > 스포츠·레저용품(3.7%) 등 ('24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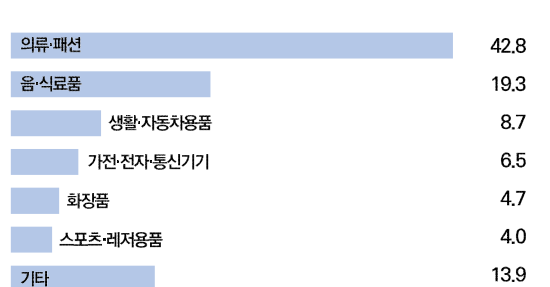
○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알리, 테무, 쉬인 등)에서의 직구 거래액은 전년 대비 53.1% 급증하며,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약 3.2조원)

[국가별 해외직구 거래액]



* 출처 : 통계청('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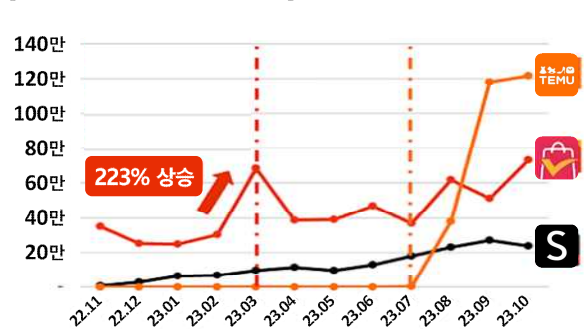
[해외직구 품목별 비중]



(자료: 2024년도 3/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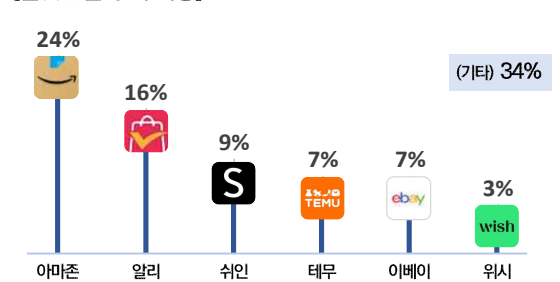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24.11)

[신규 앱 설치 건 수('22.11~'23.10)]



* 출처 : MOBILE INDEX

[플랫폼별 구매 비중]



(자료: 2023년도 기준)

* 출처 :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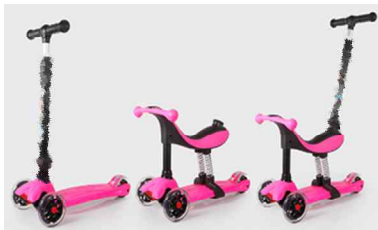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조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

4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출현

- AI·IoT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제품, 복합 기능 제품 등 어린이제품의 다양화·다변화로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
 - 제품군별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안전관리 범위·기준 등 모호
 - 기업에서는 인증 중복, 이중 부담, 인증정보 획득 애로 등의 사유로 인증 통일화 등 제품 관리기준 정비를 요구
- (융복합 어린이제품) 완구, 식품, 의약외품 등 복합 기능들이 융복합된 다양한 어린이제품 출시 중
 - 융복합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 적용이 어려운 상황
 - * 완구(산업부 어린이제품안전법) + 식품(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융복합 어린이제품 사례



(완구+킥보드)
연령별 변형되는 스쿠터



(완구+식품)
골전도 스피커 사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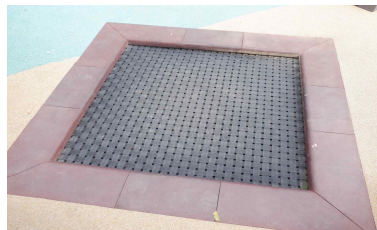
(팔찌+향료성분제품)
고형 모기 물림방지 팔찌

- (신기술 어린이제품) 최근 AI·IoT 기술의 발전과 기존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확대 중
 - 확인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한 사용자 안전 확보 등 관련 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마련이 어려움

신기술·신종 어린이제품 사례



(완구)
UV레진공예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지면 매립형 바운싱기구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허리돌리기 기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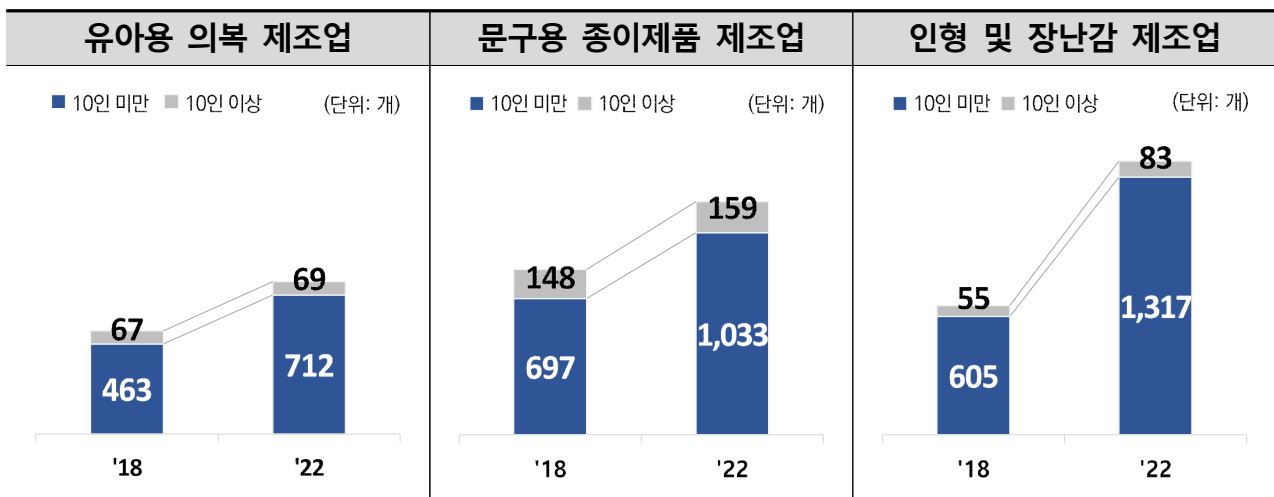
어린이제품 기업 현황

- (기업규모) 어린이제품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이며, 총 사업체 수*와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

* '18년(2,035개사)부터 '22년(3,373개사)까지 어린이제품 제조업은 연평균 13.5%로 증가

**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 '18년 1,765개사(86.5%) → '22년 3,062개사(90.8%) (▲4.1%p)

< 어린이제품 기업 현황('18 ~ '22) >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4.3)

- (제품특성) 국내 어린이제품은 수입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직구로 인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 증가

* 국내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수입 비중은 61.6%('23년)로, 주로 중국(73%), 베트남(8%) 등에서 수입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결과('24) >

조사 기관 (기간, 횟수)	조사 제품 (건)	부적합 제품 (건)	부적합률 (%)
국표원 ('24.8~11월, 2회)	227	32	14.1
서울시 ('24.4~11월, 14회)	200	81	40.5
소비자원 ('24.6~9월, 2회)	55	21	38.2
합계	482	134	27.8

- 초저가 판매 정책을 내세우는 해외 이커머스를 통한 소비자 구매가 커짐에 따라 안전성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안전인식 제고 필요

< [참고] 주요국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동향 >

□ 온라인 시장 및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규제 강화

-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온라인 유통 및 수입 차단을 위해 위험 평가 방법론(RAM*) 및 CPSC(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기능 강화**
 - * RAM(Risk Assessment Methodology) : 수입되는 소비자 제품 중 규정 미준수 또는 결함 제품을 식별·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 ** 대량의 이커머스 제품이 수입되는 입국항에 CPSC 직원 공동 배치, CPSC 위험 평가 기능 개선을 통해 규정 미준수 제품이 미국에 도달하기 前 차단 등
-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의 제정·시행('24.12)으로 온라인/수입 제품의 규제를 역내 제품 수준으로 강화
 - * 온라인 판매 제품의 정보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의무 강화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안전관련 4개 법률*」 개정**('23.12)
 - *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생활용품안전법
 - ** 법상 수입행위에 해외직구 포함, 국내관리인 선임제도 신설, 해외사업자의 의무 강화 등

□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현 등 제품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강화

-  버튼/셀 배터리를 포함하는 제품의 어린이 삼킴 우려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 수립
 - * 버튼/셀 배터리 제품 안전기준은 '23년 발효('23.10)되었으며, 배터리 포장 라벨링 요구사항은 '24.9월 이후부터 준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요구사항 관련 개정 진행 중
-  신기술 제품(해외직구 포함)에 대응하여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제정·시행('24.12) 및 완구 기준(Toy Safety Regulation) 강화 제안('23.7)
 - * 완구 대상 인체 유해 물질 금지 범위 확대, 위원회 리콜 권한 강화,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등
-  소비자제품안전법 시행명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유아 안전을 위한 신규 완구 규정 도입('23.5)
 - * 자석세트 및 흡수성 합성수지 완구를 특정 제품으로 지정, 기술표준 미준수 제품의 판매 규제 등

Ⅲ. 제3차 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 제3차 기본계획 개요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2.1월)은 안전기준, 유통관리, 기업·소비자지원,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12개 중점과제 추진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목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시장 퇴출로 안전사고 실질적 저감

1.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2.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3.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4.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이행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6개 목표 중 5개 목표 달성하였으나,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끝나면서 감소세에 있던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로 전환(목표 1.5만건 대비 '23년 2.2만건)

< 제3차 기본계획 목표 이행 현황 >

구 분	목 표 ('24년)	실 적
어린이 안전사고	15,000건	20,000건 이상 (예상) (‘23년 22,371건)
온라인쇼핑몰 협업체 등*	40개사	44개사
기업인증지원	500개	551개
안전교육	20,000명	20,887명
안전기준 강화	물리적 사고 저감	안전기준 신설·강화 -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22.10월)
안전성조사	적발위주 → 법적의무 처벌 강화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시행(‘22.8월)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운영 쇼핑몰사 포함

□ 주요 성과

- (안전기준) 국제기준에 맞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합화, 장애 어린이를 위한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도입('23.10)
 - *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대상 확대('22.1월) : 가소제 6종 → 7종
- (기업지원) 영세 어린이제품 기업의 시험검사비용 지원 확대로 인증 부담 완화
 - * ('22) 131개社·1.4억원 → ('23) 557개社·6억원 → ('24) 551개社·6억원
- (예방홍보) 제품 사고조사,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홍보* 실시
 - * ('23) 김치냉장고,유모차, 전기매트등 6회 ('24) 물놀이용품, 전동킥보드, 에탄올 화로 등 7회
- (사후관리) 안전성조사 제품 중 어린이제품 조사 비율을 50% 이상 지속 추진하는 등 어린이제품 사후관리 강화
 - * 어린이제품 조사 비중 : ('22) 50.9% → ('23) 50.3% → ('24) 50.1%
- (유통관리) 불법제품 감시공백 최소화를 위해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불법제품 유통 감시**
 - * 용역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모니터링 추진('23.1월~)
 - ** 불법 어린이제품 모니터링(건수) : ('22) 11,969 → ('23) 14,034 → ('24) 12,938
- (제품분류체계)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하여 제품의 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제품분류체계*'를 개발하고 범부처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 표준 제품분류체계 전산화 시스템(www.gpck.kr) 구축 및 사용자 가이드북 마련('23.12월)

□ 평가

◇ 제3차 기본계획 이행 결과, 어린이제품 사후관리 강화, 불법제품 감시 공백 최소화, 국제기준의 제품분류체계 마련, 기업 인증 부담 완화 등의 성과 거양, 어린이 안전사고는 증가

IV. 평가 및 시사점

-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가정에서 성인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제품**에서 많이 발생

* 어린이안전사고 : ('19) 2.5만건 → ('21)1.6만건 → ('23) 2.2만건

** 어린이 안전사고 상위 5개 품목('23) : 바닥재(10.8%), 침실가구(10.4%), 놀이터시설(7.5%), 완구(5.5%), 유아용 가구(4.7%)

 **(개선방향)** 일반제품 및 가정에서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필요

- (해외직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 확산**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 ('20) 787억원 → ('21)915억원 → ('22) 968억원 → ('23) 918억원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24년), 조사대상 227개 제품 중 **3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부적합률 14.1%, 유해물질 검출 등)

 **(개선방향)**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관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구축 필요

- (융복합·신기술)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으로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

*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 완구+화장품, 완구+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기능 제품의 출시로 소관 부처 불명확 및 안전기준 적용에 어려움

 **(개선방향)**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에 따라 모호한 안전관리 범위기준 정비 필요

- (생태계)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및 개선을 요하는 인증제도 다수 존재

*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력·비용 등 부족

* 10인 미만 비율% '22년 : 장난감 제조업(94.1), 유아용 의복 제조업(91.2%)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개선방향)**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안전인식 제고 필요

V. 비전 및 전략

비전 · 목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 어린이제품 인증간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20% 이하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 연간 500건 이상
- 위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정비 (제·개정 10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친화기업 10개社 선정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4대 전략 · 9대 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VI. 추진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1-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확대

- **(배경)** 어린이 사용 가능성이 높은 일반생활용품*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지속 발생에 따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표시사항 신설 필요

* (예) 바닥재/타일, 침실가구, 거실가구 등

- 어린이 안전사고 상위 품목*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및 해외 표시사항 등을 토대로 주의·경고 표시 강화 추진

* 어린이 안전사고 상위 5개 품목(23) : 바닥재(2,425건), 침실가구(2,331건), 놀이터 시설(1,685건), 완구(1,225건), 유아용 가구(1,062건)

- 바닥재 등 안전사고 상위품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주의·경고 표시 신설

* 품목별 안전기준 표시사항 항목에 주의·경고 문구 및 픽토그램 등 경고 라벨을 개발하여 추가

□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배경)** 제품환경 변화에 따라 어린이 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가정 내 어린이제품*에 대한 부모·어린이의 주의 환기 필요

* (예) 비타민 패치, 모기 물림 방지 팔찌 등

- 소비자시험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사용연령제한 및 주의경고표시 등 공통안전기준 개정*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사용연령제한(3세 이상), 주의경고표시(예: 어린이 피부에 부착하는 제품의 경우 - 피부발진 등 보호자의 관찰 필요) 추가

1-2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배경)**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합리화·효율성 증진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고, 안전관리 품목을 신설할 필요
- 제품 위해도에 따라 일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안전 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균형있게 조정*
* (수준조정 예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종 어린이제품(신설예시: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해 신규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
 - 시군구업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신설 대상 품목을 발굴하여, 「어린이 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품목별 안전기준 고시

□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 **(배경)**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은 품목별·시험검사항목별로 결함 정도에 따라 3단계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으로 구분·규정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3단계 결함내용 별 처분 기준*을 적용 중
* (최중결함) 제품수거 등의 명령, (중결함) 제품수거 등의 권고, (경결함) 개선명령
- 미국·EU 사례*를 참고하여 어린이제품 품목별·검사항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 현행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결함내용을 조정
* 미국·EU는 제품 리스크평가를 통해 리콜 여부를 결정 (예, 수면용 유아 스윙의 경우 수면용으로 사용 시 질식 위험으로 리콜 수행)
-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신설·변경되는 시험검사방법 별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을 체계적으로 결정

□ 안전기준 개선을 통한 시험검사방법의 효율화·신속화

- **(배경)**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은 해외 안전기준과의 부합화, 최신 시험검사방법 적용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검사항목 중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항목은 유지하고, 안전과 관련이 낮은 항목은 완화·정비

< 시험검사방법 정비(안) 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어린이 놀이기구	니트로사민류는 입에 넣거나 입과 접촉하는 경우 36개월 미만 대상의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시험검사방법 대상에서 유지하고, 접촉빈도가 낮은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제외 검토
아동용 섬유제품	섬유제품 중 피부 접촉 빈도가 현저히 낮은 제품에 대하여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및 pH 항목 적용 제외 및 완화 검토

- 어린이제품(34개 품목)은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험검사항목에서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정비 (공통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3

< **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의 불일치 사례 >

구 분	납 함유량 기준 (적용범위)	시험검사방법
품목별 안전기준 (자전거)	총 납 300 mg/kg 이하	섬유원단은 실시하고, 납 함유량 상한은 총 납 300mg/kg로 적용
공통안전기준	총 납 100 mg/kg 이하 (섬유원단 미적용)	섬유원단은 미실시

- 주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관련,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시험검사방법을 개발하고 향후 도입 검토

* 안전성 조사(21~23) 결과, 리콜 대상 어린이제품(495개) 중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초과 제품 비율은 43.6%(216개)로 높아, 시험검사 요구가 많은 수준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2-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배경)**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가 사용 중
- 「어린이제품안전법」을 개정('25)하여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22.2)을 통해 해외 직구 식품 관리체계 마련
 - ** 일본, EU 등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중

< 주요 개정안 내용 >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의** 신설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제도** 신설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 마련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중대결함 시 **관세청에 해당 제품 반입 금지 요청**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삭제 등 **권고제도** 신설
-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관련 **정보 수집·제공 근거** 신설

□ 안전성조사 실시 및 공표

- **(배경)** 現 법령상 안전성 조사는 '시중유통 어린이제품'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사 실시 규정 마련 필요
- 국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 ①조사결과 공표, ②관세청에 위해 제품 수입차단 요청, ③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권고

□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위해제품 판매페이지 삭제 권고

- **(배경)** 최근 해외 이커머스 등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통신판매 중개 사이트)를 통한 제품 구매 급증*으로 안전 우려 증가

* '23년 온라인 해외직구 6조 7,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 중국 직구액 121.2% 증가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 부과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근거 조항 마련

* **(현행)** 국내 주소·영업소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 → **(개정안)** 해외통신판매 중개자 관리 규정 신설, 국내 대리인 지정 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 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페이지 삭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권고 조치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국내대리인)는 조치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해야 하며, 판매페이지 삭제 등 권고 조치 불이행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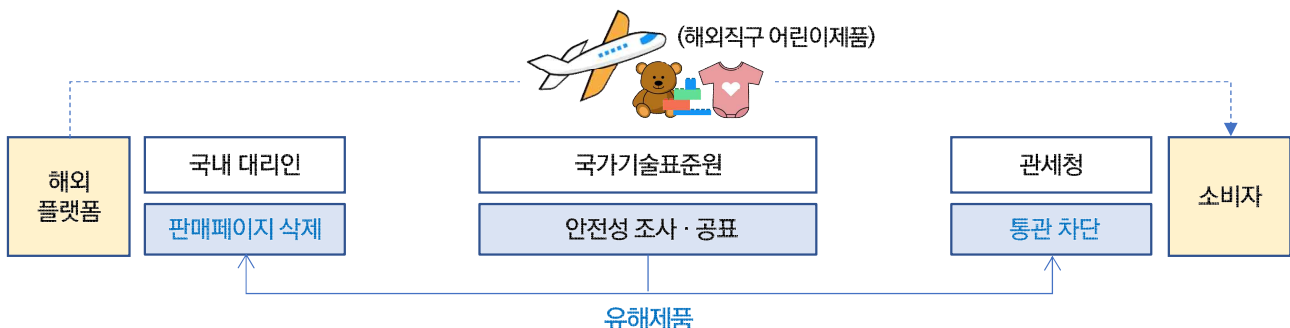
□ 위해제품 통관단계 차단

- **(배경)**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 제품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은 수입 통관단계에서 차단이 어려움

- 위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 해당 제품 반입 금지 조치 요청

* (국표원·관세청) 안전성조사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반송·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 → (관세청)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반송·폐기

- 위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차단목록 등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



2-2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및 조치 강화

- **(배경)**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국내 유입 어린이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필요

* 해외리콜 어린이제품 모니터링(건수) : ('22) 1,753 → ('23) 1,606 → ('24) 1,917

- 43개국의 리콜제품 정보를 확보하여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시 해당 사업자에 판매중지 및 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조사 요청

* 후속조치 건수(개) : ('22) 54 → ('23) 122 → ('24) 171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 시 외국에서 수거된 제품에 관한 조치보고* 등 후속조치 관련 매뉴얼** 개발·보급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유통시킨 사업자는 조치 계획을 보고하거나 자발적 리콜 수행

** 외국에서 수거 명령된 제품 등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 의무 및 자발적 리콜 절차 안내

□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확대강화

- **(배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어린이제품 차단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협의체*와 정기 간담회 등으로 협력체계를 운영 중

*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주요 유통사 16개 참여

-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참여 유통사를 확대(16개→20개)하고,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관련 분과를 신설하여 총 4개 분과* 운영

* (4개 분과) 종합쇼핑몰, 도소매몰, 홈쇼핑, 어린이전문몰

-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쇼핑몰 운영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록 상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교육 확대

* (교육내용) 온라인 쇼핑몰 제품 등록 시 판매페이지에 어린이제품 인증 표기, 미인증 제품 정보 삭제 등

** (교육확대) 1회(11월) → (변경) 정기(3월, 9월) 및 필요시 수시

□ KC미인증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등 불법제품 안전관리 강화

- **(배경)**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KC 미인증 해외 어린이 제품* 등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

*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위반 조치 건수(건) : ('21) 1,393 → ('22) 1,511 → ('23) 2,089 → ('24) 1,728

-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구매대행 사업자 단속과 국내 유통 차단 강화

* 불법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건수(건) : ('22) 60,634 → ('23) 65,109 → ('24) 74,543

- 온라인쇼핑몰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KC미인증 어린이제품 등 불법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

* 국내외 리콜 및 KC 미인증, 상품정보제공고시 불이행 등 판매페이지 삭제 요청 등

** 「어린이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사 사이버몰에서 ①KC미표시 제품 삭제, ②상품등록시 인증정보 입력, ③판매제품 KC정보의 소비자 제공 등 기술적조치 필요

□ 어린이제품 안전 정보(Open API) 제공·활용 활성화

- **(배경)**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SafetyKorea)를 통하여 어린이제품의 KC인증, 리콜 등 안전 정보를 공표하고, Open API* 정보를 제공 중**

* Open API : KC인증정보, 국내외 리콜정보 등 특정 제품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기 쉽도록 공개한 개발자 인터페이스 (API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24.10월 기준) 어린이제품 KC인증정보 210,714건, 리콜 등 위해정보 5,333건 보유

< Open API 활용 절차 >

신청	사용 허가	자사 시스템 적용	인증·리콜 정보 등 실시간 이용
Open API 신청서 작성 신청	⇒ Open API 사용을 위한 인증키 발급	⇒ 온라인 플랫폼 등에 Open API 적용	⇒ (예) 온라인 플랫폼 상품판매 페이지에 KC인증·리콜 여부 등 표출
사용자(기업·개인)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용자(기업·개인)	사용자(기업·개인)

- Open API를 활용한 온라인쇼핑몰 위해제품 신속 차단, 소비자·기업의 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포럼 운영지원

* 어린이제품 Open API 정보활용(건/일) : ('22년) 16만 → ('23년) 22만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3-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 **(배경)** 융복합·신기술 등 신규 어린이제품의 지속 출현에 따라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
 - * (사례) 현행 놀이기구 안전기준은 그네, 미끄럼틀, 회전 놀이기구 등으로 한정되어 새로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적용이 불가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신규 도입 추진
 - * 어린이 놀이기구(지면 매립형 바운싱 기구, 롤러 미끄럼틀),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등
- 기존 안전관리 대상 품목 중 신기술 적용 등으로 추가적인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기준의 개정 추진
 - * 자외선(UV)을 이용한 완구, 가정용 대형 풀장 등 물놀이 관련 완구

□ 신규 위해요소에 대응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 **(배경)** 현행 표시사항만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신규 위해요소 및 사각지대에 있는 내장·교체형 부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
 - * (사례1) 기울어진 요람은 질식사고와 관련된 안전성 검증과 주의경고표시 없이 판매 중
 - * (사례2) 전동기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전동장치에 대한 시험검사 없이 판매 중
- 신규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안전기준 등을 참고하여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방법 및 주의경고표시를 개선
-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 중 내장된 부품, 교체형 부품의 인증정보 표시방안 검토

3-2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 **(배경)** 한국제품안전관리원 內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 안전기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민관협력 거버넌스 : 정부, 인증시험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으로 구성

- 해외 안전기준의 제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 안전사고 이슈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업·소비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 수렴

* 현재는 품목별 전문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요구에 의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개요 >

- **(목적)** 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업무의 총괄 관리 및 업무수행을 통해 품목·안전기준 관리의 일관성 확보
- **(기능)**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등 안전기준 제·개정 업무에 대한 총괄 지원
 - **(①수요조사)** 제·개정 대상 품목 식별을 위한 국내외 안전기준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 **(②현황분석)** 제개정 대상 품목의 국외 기준·표준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시 근거자료 마련
 - **(③위원회 운영)** 안전기준 관련 기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완구·학용품·섬유제품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운영방안)** R&D 과제를 통한 기반 조성 및 전담기관 역할 수행(~'27)

연도	2025	2026	2027
추진 내용	- 제·개정 현황 조사 - 기준 DB화 진행 -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절차(안) 수립(지침 개발)	- 제·개정 현황 조사 - 제품현황분석 매뉴얼 개발 - 안전관리수준 조정 기준(안) 마련(지침 개발)	- 제·개정 수요조사 - 제·개정 검토위원회 운영 - 제품현황분석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어린이제품 신규 위해요인 대응 및 신속한 안전기준 수립 체계 마련
 -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모니터링 체계화를 통해 제품 내 위해 요인에 대응
 -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시 소요되는 시간·예산 등의 효율화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4-1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제품 출시 前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선·보급

- **(배경)** 기업 스스로 제품 출시 前 위해도를 확인하여 제조·설계 단계부터 보완이 가능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
 - * 제품 리스크평가 기업간담회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 시범운영('23.11~)
-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보급, 사용자 교육** 실시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 * 해외 수출 시 활용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도구 개발
 - ** 기업대상 교육(연 2회, 제품안전관리원) 및 교육교재·매뉴얼 등 자료 배포('25~)

□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배경)** 어린이제품 표시사항(사용연령 등) 및 주의사항 결함으로 높은 부적합율* 및 영유아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
 - * 표시사항 결함은 안전성조사에 따른 부적합 제품 중 80% 내외로 주요 적발 요인임
개선조치 권고처분 건수 : ('21) 1,088건(80.3%), ('22) 818건(77.5%), ('23) 649건(73.5%)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4개) 및 안전확인(16개)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25년~)

□ 어린이제품 우수기업 발굴

- **(배경)** 「어린이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중 모범적인 기업을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 가능
 - * 지정현황('16년) : 2개 기업·2개 품목(유아용캐리어, 유아용섬유제품)
 - ** 관련 지침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15.12월)
-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 연장, 시험검사비용 우선지원 등 우대사항을 통해 우수 어린이제품 기업 발굴·포상 및 제도 활성화 추진
 - * 어린이제품 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품목별 협단체 등을 통한 우수기업 추천

4-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안전확인신고(5년)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안전법」 개정)

- **(배경)** 어린이제품은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과 효력상실 처분('22.8월 시행)을 동시 적용하여 생활용품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 적용 중
 - * 생활용품은 효력상실처분 신설 시 유효기간(5년) 폐지(전기생활용품안전법, '17.1 시행)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등 16종)의 유효기간(5년)을 폐지 (어린이제품안전법 제22조제5항 삭제)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 완구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16종) 시험검사를 거쳐 인증기관에 안전확인 신고 후 제품을 출시하고, 5년마다 재시험을 통한 인증 갱신으로 기업 부담 가중

□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의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배경)**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전기·생활용품의 과태료보다 과도한 어린이제품의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선 필요

< 現 공급자적합성확인 미표시 관련 과태료 규정 비교 (단위 : 만원) >

구 분 위반 차수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1차	2차	3차 이상	1차	2차	3차 이상
상시근로자수 300 이상	300	350	400	130	260	390
10 이상 ~ 300 미만	(중략)			(중략)		
10 미만	100	150	200	30	60	90

- * 어린이제품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하게 개선

- 사업자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일괄 부과해온 과태료를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과태료 부담 완화

< 現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미보유에 대한 과태료 (단위 : 만원) >

구 분 위반 차수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1차	2차	3차 이상	1차	2차	3차 이상
상시근로자수 300 이상	150	170	200	150	170	200
10 이상 ~ 300 미만				(중략)		
10 미만				50	70	100

- * 어린이제품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부과

□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배경)** 신속한 면제 절차 제공을 위해 KC인증 면제확인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현행 절차 : (기업) 면제 신청 → (관리원) 면제 서류 검토 → (국표원) 확인서 발급 → (관리원) 확인서 기업에게 송부
- 신속한 면제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KC인증 면제확인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면제확인서 평균처리기간 : 2일 → 1일)
 - *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령」 위임위탁 규정 개정

□ 본품 이외 제품(편의제공 부분품)의 안전평가·인증 단계적 확대 추진

- **(배경)** 안전인증을 받은 본품 이외의 제품 케이스 등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로 리콜 명령, 효력상실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 사례 다수 발생
 - * 기업은 사용 빈도가 적은 부분품을 시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 절차 진행
- 제품 케이스, 인쇄 띠지, 제품 보관 주머니 등 제품에 딸린 편의제공 부분품을 본품과 함께 인증이 진행되도록 업계에 홍보하여 단계적 유도
 - *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주요 어린이제품(학용품 등)에 대해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시험검사기관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배경)**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8개)의 시험 결과의 편차 해소, 기관 간 상이한 시험방법의 일원화, 인증처리기간 준수 등 고객신뢰도 향상 필요
- 시험검사기관 검사자의 숙련도 제고를 위해 샘플링, 시험·검사, 분석장비운용 및 분석데이터의 처리·판독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품목 담당별로 어린이제품협의체를 구성하여 측정범위 논의 등을 통해 시험검사방법의 일원화 추진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 전기·생활용품은 「전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처리기간을 45일로 규정

4-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 **(배경)** 기존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속 확대*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필요

* ('22) 1.3만명 → ('23) 2만명 → ('24) 2.1만명

** 온라인플랫폼을 개발하여 선도학교 선생님, 찾아가는 안전교육 방문교사,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접하는 어린이제품 위험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별 안전체험관 활용도 제고

* ‘어린이 날’, ‘국민안전의 날’ 등 매년 전국 안전체험관에서 약1,000여명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여 직접 체험하는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 등 수요자 니즈(needs)에 맞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대국민 안전인식 확대를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및 시행

□ 어린이제품의 개발·제조·유통 단계에 있는 관계자의 안전인식 제고

- **(배경)** 어린이제품의 소 유통과정에 있는 사업자들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필요

* 수도권으로 한정되었던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사업자의 접근성을 고려, 광역시로 확대

- 생활용품 대비 시험·검사 항목이 많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기준·인증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추진

* 약 1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뉴스레터 발송(연 5회)

* ('22) 3천개社·연 3회 ('23) 1만개社·연 5회 ('24) 1.1만개社·연 5회

VII. 기대효과



어린이 안전사고비용
20% 이하 저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500건/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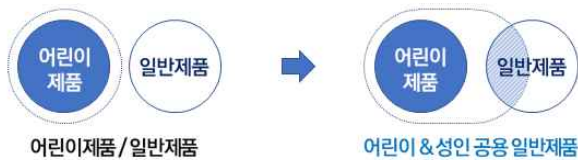
융복합·신기술 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10건



안전친화기업
10개사 선정

1.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정비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체계가 확립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범위 확대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내 유통 불법 어린이제품 차단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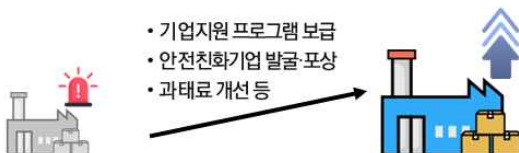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4.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안전인식이 확대됩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제조사-소비자 안전관리 인식 제고



추진 과제	추진일정			주요 내용
	1차년	2차년	3차년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어린이·성인 공동 사용 제품의 주의/표시사항 강화 △가정 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통안전기준 개정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신속화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법적 기반 마련 △안전성 조사 실시 및 공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판매페이지 삭제 권고 △위해제품 통관단계 차단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국내 유통 리콜제품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확대·강화 △구매대행 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Open API 제공·활용 활성화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신규 위해요소 대응 안전기준 마련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제품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선·보급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자동생성 프로그램 보급 △어린이제품 우수기업 발굴·홍보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 과태료 개선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시험검사기관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어린이제품 사업자 역량 강화

(단위: 백만원)

추진 과제	추진일정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200	250	300	750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500	600	700	1,800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280	350	400	1,030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90	100	110	300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500	600	700	1800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300	300	1,000	1,600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400	450	500	1,350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200	200	200	600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288	300	320	908
총 합	2,758	3,150	4,230	10,138

붙임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품목 (34품목+∞)

인증 구분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인증 (4)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 (16)	•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완구 • 학용품 • 유아용 삼륜차 • 어린이용 자전거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캐리어 • 유아용 침대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공급자 적합성확인 (14)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장신구 • 쇼핑카트 부착품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기타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외 어린이제품의 경우 "기타 어린이제품"으로 분류